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88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	3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6. 14.

다. 회 부 일: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
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
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
조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¹⁾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생략)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u> 이를 징수한다.	③ ----- ----- ----- ----- <u>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제2항²⁾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³⁾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16조⁴⁾ 또는 제20조⁵⁾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34조제1항⁶⁾은 이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등록취소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舊 체납처분⁷⁾)의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제34조제3항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⁹⁾받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절차가 준용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¹⁰⁾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과징금 등 체납 시 지방세 강제징수의 절차가 아니라 동 법률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인바, 이처럼 개별 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은 약 2백여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¹¹⁾

7) 종전의 ‘체납처분’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강제징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과징금 부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와 달리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법률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를 지방세 강제징수의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징수방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은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 이용’이나 ‘대금지급정지’와 같은 효과적인 간접강제수단¹²⁾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징금의 징수를 ‘지방세’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위 제34조제3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를 개정안과 같이 정비할 경우 위와 같은 간접강제수단을 통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11)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22. 8. 행정안전부는 행정제재적 성격의 세외수입 징수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한 바 있음.

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강제수단은 ‘[참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준용 시 적용 가능 제도’ 참조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관련 현행 규정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권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1조는 본 법률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으로, 비밀유지·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계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계장부 작성·비치·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이 경우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4항).¹³⁾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현행법 제29조제4항¹⁴⁾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¹⁵⁾

이에 개정안은 위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이는 지난 2020. 6. 9. 위 제3항의 신설 과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설 조항의 취지 및 여타 과태료 관련 규정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2023.8.8.)」).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시 적용 가능 제도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시 적용 불가

2022. 8. 행정안전부

□ 적용 가능 제도 개요

제도명	내 용	기대 효과
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제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이용가능 등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경우 과세자료 확보 불가, 부과금법 준용 시 활용 가능
대금지급 정지 (제7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 상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가능	대금 지급과 동시에 압류하는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체납액 납부 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가능
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2)	3회 이상 체납 후 1년 경과된 체납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가능	관허사업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예고통지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가능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3)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는 명단공개 가능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소명기회 부여기간 중 납부독려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가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6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등을 법무부에 제공 가능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에 체납자료를 활용하여 체납 시 체류기간단축 등을 통해 납부독려 가능
징수촉탁 (제7조의4)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음	징수촉탁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가능 ※ 촉탁을 위한 MOU 既체결 ('18.7.1., 17개 시·도지사)
환급금의 충당 (제7조의7)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체납액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체납액 충당으로 징수율 제고 가능 ▶충당을 통해 환급금 압류·추심 등 행정절차 간소화
압류의 효력 (제9조의2)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 미침 ▶임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침	▶체납액 건별 압류를 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행정편의 향상 및 복잡한 등기등록사항 정리를 통해 납부자 편의 증대 ▶압류 효력 연장을 통해 납기 도래 후 압류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가능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지자체 예산 절감 및 납부 절차 이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